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926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1명)

찬 성 자 : 김평남, 최웅식, 홍성룡,  
성중기, 이상훈, 한기영,  
이현찬, 김화숙, 전석기,  
김상훈, 성흠제 의원(11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11년 최초 구축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의 복잡·노후화 및 보안문제 등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활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의 전면 사용전환을 추진코자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나. 기존 지급확인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7조제3항, 제7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업자”란”을 ““건설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도급·하도급·위탁”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원도급자”란”을 ““수급인”이란”으로, “건설업자를 말하며”를 “건설사업자를 말하며”로,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를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하고, 제7호의 호번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을 각각 “수급인과 하수급인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도급자·하도급자는”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으로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원도급자로부터”를 “수급인으로부터”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하도급자”를 각각 “하수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원도급자에게”를 “수급인에게”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를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을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을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건설업자에”를 “건설사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한다.

제1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u>원도급자와 하도급자</u>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청렴서울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설업자</u>”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li> <li>2. “<u>도급</u>”이란 <u>원도급·하도급·위탁</u>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li> <li>3. “<u>하도급</u>”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u>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li> <li>4. “<u>원도급자</u>”란 발주자로부터 건</li> </ol>	<p>제1조(목적) ----- ----- <u>수급인과</u> <u>하수급인</u> ----- ----- -----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건설사업자</u>”란 ----- ----- ----- -----.</li> <li>2. ----- <u>원도급, 하도급, 위탁</u> ----- ----- ----- ----- -----.</li> <li>3. ----- ----- <u>다시 도</u> <u>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u> ----- -----.</li> <li>4. “<u>수급인</u>”이란 -----</li> </ol>

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하도급 호민관”이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생략)  
② 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

<삭 제>

6. ----- 하수급인-----  
-----  
-----  
-----  
-----.

제4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급인과 하수급인 -----

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시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  
-----.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  
-----.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 -----  
-----  
-----  
-----  
-----  
-----  
-----  
-----  
-----.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  
-----.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시장은 지급확인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  
-----  
-----  
-----.

<삭 제>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서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지급확인시스템이 건설공사에 널리 적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⑧ 시장은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원도급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 수급인과 하수급인 -----  
-----  
-----  
-----  
-----  
-----  
-----.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 수급인으로부터 -----  
-----  
-----  
----- 하수급인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하수급인 -----  
-----.

④ ----- 수급인에게 -----  
----- 수급 -----

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시장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에서 건설업자의 불법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

인은 하수급인-----  
-----  
-----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 수급인과 하수급인 -----  
-----  
-----  
-----.

② -----  
----- 수급인, 하수급인 -----  
-----  
-----.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  
-----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 ----- 건설사업자에 -----  
-----  
-----.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사안 중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하도급 호민관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호민관을 둔다.

② ~ ④ (생략)

제15조(인센티브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⑤ -----  
-----  
-----  
----- 건설사  
업자-----  
--.

제14조(하도급 호민관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하수급인-----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센티브 등) -----  
-----  
----- 건설  
사업자-----  
-----.